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368

발의연월일: 2024. 8. 29.

발 의 자:윤종오·박은정·황명선

정춘생 · 김준형 · 전종덕

정진욱 · 김동아 · 김태선

정혜경 의원(10인)

제안이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라는 명분으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은 물론 일반 시민 등의 통신이용자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 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언론 감시'와 '통신 사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크게 늘어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검찰과 경찰, 국정원,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전화번호는 460만 건을 웃돌고 있음.

통신이용자정보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없이 임의로 수집할 수 있고, 다른 정보와 결합될 때 개인정보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한 법원에 의한 통제가 필요함.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영장없이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지적한 바 있음.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영 장절차 없이 이용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현행 통신자료 제공제도 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법률개정을 권고했음.

한편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처럼 그 사실을 7개월 뒤에 통지하고, 사유도 추상적으로기재하는 등 해당 규정이 형해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엄격히 하고 통지를 유예할 경우도 법원의 허가에 의하도록 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검사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83조의2 및 제83조의 3 신설).
- 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검사 등이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의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법원의 허 가를 받도록 함(안 제83조의4).

다.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는 해당 정보 제공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며, 사용이 끝나면 즉시 삭제하도록 함(안 제83조의5 신설).

법률 제 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과 제4항의"를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3까지의"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를 "갖추어 두고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날부터 7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제3항"을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3까지의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제83조의3 및 제83조의4를 각각 제83조의6 및 제83조의7로 하고, 제83조의2를 제83조의4로 하며, 제83조의2 및 제8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83조의4(종전의 제8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3조제3항"을 "제83조의2"로,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을 "검사, 사법경찰관"으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8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증거인멸"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로, "있는 경우"를 "현저한 때"로 하고, 같은 항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범죄수사 등을 위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절차) ① 검사 (군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수사다 (도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수사(도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또는 형의 집행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이용자정보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 1. 이용자의 성명
-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 3. 이용자의 주소
- 4. 이용자의 전화번호
-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통신자료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 특정사건 수사 또는 특정인에 대한 형의 집행과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한 서면(이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허가청구서"라 한다)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검사에게 해당 통신이용자정보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 특정사건 수사 또는 특정인에 대한 형의 집행과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한 서면(이하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허가신청서"라 한다)으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허가청구사건의 관할 법원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을 받게 될 전기통신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또는 본사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보통 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 ⑤ 제2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때에는 해당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한 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하기청구서 등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에 7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⑦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2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허가 청구 및 그에 대한 결정 현황 등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를 7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83조의3(법원에의 통신자료제공)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에 따라 전기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 1.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사실을 통지할 경우 국가 및 공공의 안전보 장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현저한 때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가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한 통지유예허가청구서 로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에 대하여 통지유예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제2항 각 호의 사유에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한 통지유예허가청구서로 관할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지유예허가청구 시 관할 법원 및 고등법원에 대하여는 제83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 ⑥ 검사, 사법경찰관은 통지를 유예한 기간이 종료되거나 제2항 각호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

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 검사, 사법경찰관은 해당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서 등과 함께 통지유예허가서 등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제8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3조의5(통신이용자정보의 사용제한 및 삭제) ①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는 다음 각 호의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1.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2. 제1호의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 3. 통신이용자정보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 4.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 ② 검사, 사법경찰관은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를 제1항 각 호의목적을 위해 사용이 끝난 뒤 즉시 해당 통신이용자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 제94조제3호 중 "제83조제3항을"을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3까지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8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제공된 통신자료를 사용한 자
 - 5. 제83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통신자료를 삭제하지 아니

한 자

제9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3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기재하여 갖추어 둔 자
 - 2. 제83조의4를 위반하여 통신자료제공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제104조제5항제1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4 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했 개 정 아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②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 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 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 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 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 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범 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 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 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 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통신이용 자정보"라 한다)의 열람 또는 제출(이하 "통신이용자정보 제 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 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 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 일
- ④ 제3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정보제공요청서"라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전기통신사업자는 <u>제3항과</u> 제4항의 절차에 따라 통신이용 자정보 제공을 한 경우에는 해 당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대장과 정보 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갖

<u><삭 제></u>

5		<u>제83조의</u>
2부터	제83조의3까지]의

추어 두어야 한다.

- ⑥ (생략)
-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u>제3항</u>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한다. 다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한 자가 법원인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⑧ (생 략)
- ⑨ 정보제공요청서에 대한 결 재권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u><신 설></u>

	갖추어	두고	통신
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남	<u> </u>
<u> 7년간 보관</u> 하	나 여야 한	<u> 단</u> .	
⑥ (현행과	같음)		
7		<u>제</u> 8	3조의
2부터 제832	조의3까거	시의 경	<u>절차</u>
⑧ (현행과	같음)		
<삭 제>			

제83조의2(범죄수사 등을 위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절차) ① 검사(군검사, 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법 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은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조사를 포함한다) 또는 형의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각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 1. 이용자의 성명
-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 3. 이용자의 주소
- 4. 이용자의 전화번호
-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 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 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 일
-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통신자료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사유, 특정사건 수사 또는 특정

인에 대한 형의 집행과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 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 고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 한 서면(이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허가청구서"라 한다)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만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 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 청한 후 지체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검사에게 해당 통신이용자정보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 특정사건 수사 또는 특정인에 대한형의 집행과 해당 이용자와의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에 관한소명자료를 첨부한 서면(이하"통신이용자정보제공 허가신청서"라 한다)으로 통신이용자정보서 검사"라 한다)으로 통신이용자정보 보제공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

<u>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u> <u>청구할 수 있다.</u>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허가청구사건의 관할 법원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을 받게 될 전기통신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또는 본사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한다.

⑤ 제2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 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 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이용 자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 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때에는 해당 통신이 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한 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등 필 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 신이용자정보 제공 허가청구서 등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에 <신 설>

제83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① 제83 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다 하다)은 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신이용자정보

7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2 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 공 허가청구 및 그에 대한 결 정 현황 등 기타 대법원규칙으 로 정하는 관련 자료를 7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3조의3(법원에의 통신자료제 공)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 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4 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 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 다. 제83조의4(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을 받은 사실의 통지) ① 제83 조의2----------<u>검사,</u> 사법경찰관-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 야 한다.

- 1. ~ 3. (생략)
- ② <u>수사기관등은 제1항에도 불</u> 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 1. 국가 및 공공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

 오
- 2. (생략)
- 3. <u>증거인멸</u>,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4. (생략)
- 5.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유예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

- 1. ~ 3.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를 유 예할 수 있다.
- 1.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사실을

 통지할 경우 국가 및 공공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우려

 가 현저한 때
- 2. (현행과 같음)
- 3. <u>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통지</u> <u>할 경우 증거인멸-----</u> -----<u>현</u>저

한 때

4.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제2항에 따라 검사가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따른다.

-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의 기간
- 2.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 두 차례에
 한정하여 매 1회 3개월의 범
 위에서 정한 기간
- ④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 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경우로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 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또 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
- 2.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 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산하 단체의 구성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 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한 통지 유예허가청구서로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에 대하여 통지유예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한 통지유예허가청구서로 관할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⑤ ~ ⑧ (생 략)

<신 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 지유예허가청구 시 관할 법원 및 고등법원에 대하여는 제83 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 ⑥ 검사, 사법경찰관은 통지를 유예한 기간이 종료되거나 제2 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경 우에는 3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⑦ 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 검사, 사법경찰관은 해당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서등과 함께 통지유예허가서 등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 <u>⑧</u> ~ <u>①</u> (현행 제5항부터 제8 항까지와 같음)
- 제83조의5(통신이용자정보의 사용제한 및 삭제) ① 제83조의2 부터 제8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1.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제83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제83조의6(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 행) (생략)

제83조의4(대행기관에 대한 관리 • 감독) (생 략)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94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 략)

범죄를 수사 · 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 하는 경우

- 2. 제1호의 범죄로 인한 징계절 차에 사용하는 경우
- 3. 통신이용자정보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 4.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 ② 검사, 사법경찰관은 제공받 은 통신이용자정보를 제1항 각 호의 목적을 위해 사용이 끝난 뒤 즉시 해당 통신이용자정보 를 삭제하여야 한다.

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 행) (현행 제83조의3과 같음)

제83조의7(대행기관에 대한 관리 • 감독) (현행 제83조의4와 같 유)

1. • 2. (현행과 같음)

3. 제8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	3. <u>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3까</u>
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자	<u>지를</u>
및 그 제공을 받은 자	
<u><신 설></u>	<u>4. 제8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u>
	제공된 통신자료를 사용한 자
<u><신 설></u>	5. 제83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통신자료를 삭제하
	<u>지 아니한 자</u>
<u><신 설></u>	제9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3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
	런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갖추어
	<u>둔 자</u>
	2. 제83조의4를 위반하여 통신
	자료제공에 관한 통지를 하지
	<u>아니한 자</u>
제104조(과태료) ① ~ ④ (생	제104조(과태료) ① ~ ④ (현행
략)	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⑤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5호·제6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 1. ~ 12. (생 략)
- 13. 제83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
 <삭 제>

 런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갖추어 둔 자

14. ~ 17. (생략)

⑥ (생 략)

-----.

1. ~ 12. (현행과 같음) <삭 제>

14. ~ 17.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